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	
	내용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43조제7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4항제1호·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